Park Dream

봉덕 | 화성파크드림 입주자모집공고

6월 9일 OPEN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6월 12일(월)	6월 13일(화)	6월 14일(수)

화성
www.hwasung.com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 14582호(2017.6.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공고일 2017.6.7 대구신문 공고)

▣ 청약시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아파트로 총332세대 중 조합원분양분 84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48세대에 대한 모집공고임.
-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됨.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7) 현재 대구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북도 거주지까지 확대하여 공급함.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21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3개월 이상(2017.3.7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1조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6.7)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자 중 만 65세이상인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한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임.
-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2.27)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됨.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 1명만 청약가능함)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규모에 청약가능하며, 주택규모변경 기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수에 따른 감점 폐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없음.
-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 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공동주택의 세대별 공급면적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이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865-14번지 외 일원

▣ 대지면적 : 13,079.3㎡ [실 사업대지면적]

▣ 공급개요

- 지하 2층~지상20층 아파트 3개동, 총 아파트 332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중 조합원 분양분 84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48세대임.
[특별공급 총 67세대 포함 (일반 특별공급 21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1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4세대)]

▣ 공급현황 [조합분양 + 일반분양]

(단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조합원 공급세대수	일반분양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주거전용+주거공용	기타공용(지하주차장포함)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69.6487A	69.6487	21.4102	91.0589	37.6271	128.6860	35.0322	2	10	28	38	2
69.6487B	69.6487	18.8153	88.4640	37.6271	126.0911	35.0322	2	3	15	18	1
69.6014C	69.6014	19.0065	88.6079	37.6015	126.2094	35.0084	0	3	14	17	1
72.6581	72.6581	21.6792	94.3373	39.2529	133.5902	36.5459	51	19	47	66	6
84.8590A	84.8590	22.5103	107.3693	45.8444	153.2137	42.6828	29	29	61	90	6
84.9644B	84.9644	22.5226	107.4870	45.9013	153.3883	42.7358	0	3	16	19	1

▣ 공급대상 및 면적 [일반분양분]

(단위:㎡)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주거전용	주거공용	주거전용+주거공용	기타공용(지하주차장포함)	계	
민영 주택	2017000563-01	69.6487A	38	69.6487	21.4102	91.0589	37.6271	128.6860	35.0322
	2017000563-02	69.6487B	18	69.6487	18.8153	88.4640	37.6271	126.0911	35.0322
	2017000563-03	69.6014C	17	69.6014	19.0065	88.6079	37.6015	126.2094	35.0084
	2017000563-04	72.6581	66	72.6581	21.6792	94.3373	39.2529	133.5902	36.5459
	2017000563-05	84.8590A	90	84.8590	22.5103	107.3693	45.8444	153.2137	42.6828
	2017000563-06	84.9644B	19	84.9644	22.5226	107.4870	45.9013	153.3883	42.7358

※ 아래 공급세대수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만 표시하였으니 견본주택의 동 · 호수표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향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천원)

주택형 (㎡)	층구분	공급 세대	공급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17.8.10	17.12.10	18.3.10	18.6.10	18.10.10	19.1.10	19.4.10	입주지정기간내
69.6487A	1층	2	94,797	161,203	256,000	10,000	1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76,800
	2층	2	100,722	171,278	272,000	10,000	1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27,200	81,600
	3~5층	6	106,646	181,354	288,000	10,000	1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86,400
	6~9층	7	112,571	191,429	304,000	10,000	20,400	30,400	30,400	30,400	30,400	30,400	30,400	91,200
	10층이상	21	118,496	201,504	320,000	10,000	2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96,000
69.6487B	1층	1	93,316	158,684	252,000	10,000	15,200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75,600
	2층	1	99,240	168,760	268,000	10,000	16,8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26,800	80,400
	3~5층	3	105,165	178,835	284,000	10,000	18,400	28,400	28,400	28,400	28,400	28,400	28,400	85,200
	6~9층	3	111,090	188,910	300,000	10,000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90,000
	10층이상	10	115,163	195,837	311,000	10,000	2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93,300
69.6014C	1층	1	93,686	159,314	253,000	10,000	15,300	25,300	25,300	25,300	25,300	25,300	25,300	75,900
	2층	1	99,611	169,389	269,000	10,000	16,900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80,700
	3~5층	3	105,536	179,464	285,000	10,000	1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85,500
	6~9층	4	111,460	189,540	301,000	10,000	2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90,300
	10층이상	8	115,534	196,466	312,000	10,000	2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93,600
72.6581	1층	5	115,904	197,096	313,000	10,000	21,300	31,300	31,300	31,300	31,300	31,300	31,300	93,900
	2층	6	119,607	203,393	323,000	10,000	2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96,900
	3~5층	18	123,310	209,690	333,000	10,000	2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33,300	99,900
	6~9층	8	125,161	212,839	338,000	10,000	23,800	33,800	33,800	33,800	33,800	33,800	33,800	101,400
	10층 이상	29	127,013	215,987	343,000	10,000	24,300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02,900
84.8590A	1층	5	129,235	219,765	349,000	10,000	24,900	34,900	34,900	34,900	34,900	34,900	34,900	104,700
	2층	6	132,938	226,062	359,000	10,000	25,900	35,900	35,900	35,900	35,900	35,900	35,900	107,700
	3~5층	18	136,641	232,359	369,000	10,000	2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110,700
	6~9층	16	140,714	239,286	380,000	10,000	2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114,000
	10층이상	45	142,195	241,805	384,000	10,000	28,4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115,200
84.9644B	2층	1	127,383	216,617	344,000	10,000	2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103,200
	3~5층	3	131,086	222,914	354,000	10,000	2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106,200
	6~9층	4	134,789	229,211	364,000	10,000	2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109,200
	10층이상	11	138,492	235,508	374,000	10,000	27,400	37,400	37,400	37,400	37,400	37,400	37,400	112,2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 개정(2015.04.10)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비용이 미포함 되어있는 금액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었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양임.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실, 기계실 등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 ·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함. (이 때,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 전산 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청약신청시 청약자의 착오 및 기재오류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어 가입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불가에 따른 책임을 당사에서 지지 않음.
- ■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함.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함.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

(단위: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확장위치	확장비용	비 고
69.6487A	거실, 내실, 침실1, 침실2	8,500,000	
69.6487B	거실, 내실, 침실1, 침실2	8,500,000	
69.6014C	거실, 내실, 침실1, 침실2	8,500,000	
72.6581	거실, 내실, 침실1, 침실2, 주방	9,000,000	
84.8590A	거실, 내실, 침실1, 침실2, 주방	10,000,000	
84.9644B	거실, 내실, 현관, 침실1, 침실2, 주방	10,000,000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05.12.5 개정 · 시행)
-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별도 계약 품목임.
-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은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특별공급 신청	2017.6.12(월) 10:00 ~ 14:00	당사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7.6.12(월) 17: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일반 특별공급, 제40조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41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공통자격

1.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를 제외함.(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전용면적 85㎡이하만 해당)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청약통장은 부활)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시 주택소유로 간주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계	69.6487A	69.6487B	69.6014C	72.6581	84.8590A	84.9644B
일반 특별공급	21	3	1	1	6	9	1
다자녀 특별공급	21	3	1	1	6	9	1
신혼부부 특별공급	21	3	1	1	6	9	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4	1	0	0	1	2	0
합 계	67	10	3	3	19	29	3

■ 계약체결일 : 2017.6.26(월) ~ 2017.6.28(수) (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21세대 / 전용 85㎡이하 세대의 10% 이내)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21세대 / 전평형의 10% 이내)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개정 2016.11.15.)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3개월 이상(2017.3.7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2016.11.15)]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이상	1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21세대 / 전용 85㎡이하 10% 이내)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 전년도(201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16,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 소득 ×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여야 함.(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인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라)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됨.

-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 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 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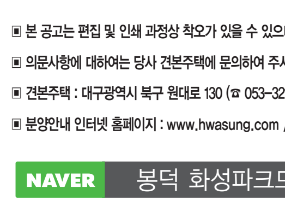

2017년 05월 0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인)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기기	적용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됨

▣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 053-321-8922)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hwasung.com / bongdeok-parkdream.com

NAVER 봉덕 화성파크드림 ▾　bongdeok-parkdream.com

분양문의 053)321-8922

견본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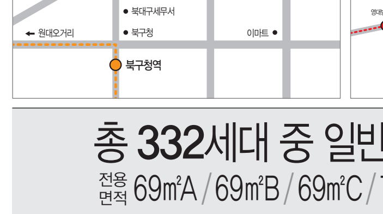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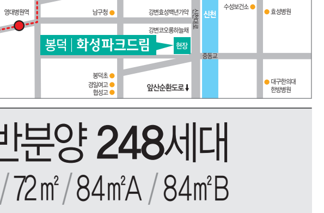

총 332세대 중 일반분양 248세대

전용면적 69㎡A / 69㎡B / 69㎡C / 72㎡ / 84㎡A / 84㎡B

시행 : **봉덕2동가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 **화성산업**